

책임판단 연구의 개관

고 재 흥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책임판단에 관한 Heider의 이론적 뿌리와 그 후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독립변인 범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인과추론과 책임판단의 혼동, 책임의 다의미성, 및 여러 의미의 책임판단에 사용되는 기준들로 구분하여 책임판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책임'의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및 사후적 책임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eider가 처음부터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도 구분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만약 책임을 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상충된 결과들의 대부분이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유형의 책임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은 일종의 Guttman 척도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임판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의 책임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책임판단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Heider(1958)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Heider는 행위결과(action outcome)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행위자의 힘(personal force)과 환경적 힘(environmental force)을 가정하였고, 이 두 요인은 행위결과의 산출에 가산적(additive)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환경적 힘이 전무한 경우 행위결과는 전적으로 행위자의 힘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행위자의 힘(personal force)을 능력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의도(intention)와 노력(exertion)을 동기 요인으로 보았고 이들은 승적(multiplicative) 결합 방식으로 관계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전혀 없는 경우 (즉 힘의 크기가 0인 경우)는 행위자의 힘의 크기도

0이 되기 때문이다(Heider, 1958, pp. 82-83).

그러므로 어떤 행위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크기는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행위자 요인 중에서도 능력보다는 그(녀)의 의도나 노력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P)이 곤경에 빠진 또 다른 사람(Q)을 도울 능력이 없어 돋지 못한 경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P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pp. 112-113).

Heider에 따르면, 사람들은 책임의 개념을 연속적 단계를 지닌 것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수준은 어떤 결과(X)가 그 사람(P)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거나 그 결과가 그(녀)에 속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그(녀)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P가 속한 국가가 저지른 잘못된 일에 대해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와 자식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 기준을 Shaw와 Sulzer(1964)는 연관성(association) 기준이라 불렀다.

두 번째 수준은 비록 P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일지라도 그(녀)가 결과 X의 발생에 필요 조건인 경우, P에게는 책임이 부여된다. Heider는 이 경우의 책임이 Piaget(1932)가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이라 고 부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Shaw 등은 이 기준을 인과성(causality) 기준이라 불렀다.

세 번째 수준은 비록 P가 노린 결과가 아닌 경우라도 P가 예전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P가 어리석기 때문에 행한 행위결과에 대해서도 그(녀)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Shaw 등은 이 기준을 예견성(foresightability) 기준이라 불렀다.

네 번째 수준은 P가 의도한 행위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여하는 수준이다. 이는 Piaget가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이라 부른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haw 등은 이 기준을 의도성(intentionality) 기준이라 불렀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결과 X가 P 자신의 동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결과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을 때, P의 책임은 작게 지각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끔찍한 가난 때문에 물건을 훔친 경우,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줄어든다. 이는 절감원리(Cha, 1971; Kelley, 1971)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Shaw 등은 이 기준을 정당성(justification) 기준이라 불렀다.

이상의 다섯 수준에서 보듯이 나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발생의 조건들(예: 의도, 행위자의 힘, 환경적 힘) 중 어느 것 이 결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행위자의 책임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의도가 있었던 행위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닌 경우,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기여가 작

을수록, 행위자에게는 큰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책임을 부여할 주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사물'일 때보다는 또 다른 '사람'인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은 작게 지각될 것이다 (Alicke, 1992 참조).

경험적 연구들

위와 같은 Heider의 제안이 있은 다음에 여러 연구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띠고 책임판단의 문제를 다루었다. 책임판단을 경험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연구들은 각각 Shaw와 Sulzer(1964)의 연구와 Walster(1966)의 연구이다. Shaw 등의 연구는 판단자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책임판단에 사용되는 기준들의 차이를 알아 본 연구이고, Walster의 연구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낸 행위자의 책임크기의 차이가 피해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본 연구이다. 이들 두 연구는 각기 독립된 연구영역을 구축하여 이어져 왔다(Fincham & Jaspars, 1980 참조).

본 논문에서는 먼저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에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독립 변인의 범주에 따라 (1)피해크기의 효과, (2)행위자 특성의 효과, 그리고 (3)판단자 변인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개관할 것이다.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

책임판단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룬 초기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 Walster(1966)이다. 그녀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귀인크기를 알아보았다. 피험자들은 작은 피해(즉 미약한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묘사된 행위자에 비해 큰 피해(즉 인명 피해와 큰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묘사된 행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더 크게 부여하였다. Walster(1966)의 연구 결과는 귀인과정이 원인추론을 통해 외계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갖게 되는 수단 이외에도,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Kelley, 1971 참조). 즉 사람들은 행위자의 통제밖에 있는 결과에 대

해서도 행위자에게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Walster는 부정적 결과의 크기가 작을 때보다는 클 때 이런 경향(일종의 귀인편향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녀의 결과는 그 예상을 지지해 주었다. Walster(1966)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불행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 “이런 일이 누구한테 나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 진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과 유사한 불행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낸 사고를 그(행위자)의 잘못 때문으로 분류하고 나면, 안심이 된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은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혹은 유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녀)와는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행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p. 74).

그러나 Walster(1966)의 연구는 책임부여를 원인귀속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판단을 다룬 것이었다. 이처럼 원인(cause)과 책임(responsibility)의 개념적 구분이 애매한 상태로 많은 연구들(예: Shaver, 1970b)이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동기적 설명 Shaver(1970ab)는 Walster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어적 귀인(defensive attribution)의 한 형태로 해석하였다. 방어적 귀인이란 판단자들이 어떤 행위자와 관련된 나쁜 결과의 책임을 외부적인 것(예: 재수 없음)으로 돌린다면 그러한 외부적 원인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에게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판단자들 자신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피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서 나쁜 결과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하여 버린다. 그리하여 그런 나쁜 결과의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자 자신에게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방어적 귀인은 결과가 나쁜 것일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Shaver(1970b)는 Walster의 또 다른 연구(1967)에서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부여 크기가 차이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연구(1966년 연구와 1967년 연구)를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나쁜 결과가 피험자에게 위협을 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966년 연구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행위자의 상황과 피험자(대학생) 자신의 상황이 유사하여 그런 사고는 피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1967년 연구에서 행위자가 주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는 피험자(대학생)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아 위협적이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려면 피험자들이 위협을 느껴야만 되는데 1967년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하여 Shaver는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그는 방어적 귀인이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relevance)이 높은 경우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성이란 주로 상황의 유사성(situational similarity)과 개인적 유사성(personal similarity)에 의해 결정된다. 상황의 유사성은 “어떤 행위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 상황과 판단자 자신의 상황간의 지각된 유사성 정도”로 정의되고(Shaver, 1970b, p. 106), 상황의 유사성이 커야만 방어적 귀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려면 먼저 나쁜 결과가 판단자 자신에게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일어난 상황이 판단자 자신에게도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커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와 판단자가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각의 왜곡이 어렵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 유사성은 “(판단자와) 행위자간의 지각된 신념, 가치, 및 개인적 특성들의 일치성”을 의미한다(Shaver, 1970b, p. 106). 행위자와 판단자가 유사한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의 발생을 행위자보다는 나쁜 운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오히려 판대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Shaver(1970b)는 상황의 유사성이 방어적 귀인 발생의 필요조건이고, 개인적 유사성은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Walster(1966)의 연구 절차에 개인적 유사성 변인을 첨가하여 그 연구를 반복 검증하려 하였으나, Walster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Shaver, 1970b 실험 3). 그는 자신의 실험 1에서 피해크기를 고정시킨 다음 개인적 유사성을 행위자와 피험자(판단자)의 나이를 같게 혹은 다르게 하여 조작하였고, 실험 2에서는 행위자의 태도와 가치관을 피험자 자신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혹은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행위자와 자신이 유사한 조건이 유사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같은 결과(여기서는 Walster 연구의 심각한 사고 조건임)에 대한 행위자 책임을 작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결과 실험 1에서는 개인적 유사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 2에서는 행위자가 피험자 자신과 유사한 경우에 비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서 (같은)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는 Shaver의 예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관련성(행위자와 판단자의 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조작함)과 피해크기(피해크기는 Walster의 1966년 실험과 동일하게 처리)를 모두 조작한 실험 3에서는 관련성과 피해크기의 상호작용을 예상하였으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피해크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방어적 귀인의 존재 여부에 의문점을 던져 주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Shaver가 제시한 방어적 귀인의 발생조건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려 하였다(예: Chaiken & Darley, 1973; McKillip & Posavac, 1975; Shaw & Skolnick, 1971). 특히 Shaw와 McMartin(1977)은 상황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만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며, 덧붙여 행위자와 판단자가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이 관대해지고, 행위자와 판단자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판단이 가혹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위의 두 경우 모두가 자기 방어적 동기 때문에 나온 방어적 귀인이라 보았으나, 이중 후자의 경우를 진정한 의미의 방

어져 귀인이라 하였다. Phares와 Wilson(1972)은 행위자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만 방어적 귀인이 일어남을 밝혔다. 이런 유형의 연구들은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는 또 다른 조건들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이루 어진 것들이다.

행위의 결과크기와 행위자의 책임크기 간의 관계를 다룬 22개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mata-analysis)한 Burger(1981)는 여러 반증되는 결과들(예: Shaw & Skolnick, 1971; 이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Fincham & Jaspars, 1980 참조)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귀인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Burger는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는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 및 상황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의 대안적 설명(예: Brewer, 1977)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증거들을 근거로 볼 때,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판단자들이) 사고의 책임을 동기적으로 왜곡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p. 507)고 결론지었다. 그 이후에 동기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로서 Thornton과 그의 동료들(Thornton, 1984; Thornton, Hogate, Moirs, Pinette, & Presby, 1986)은 생리적 흥분을 이용한 誤歸因(misattribution) 패러다임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판단이 동기적으로 왜곡됨을 입증하였다.

인지적 설명 피해크기가 커짐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이 크게 지각되는 현상을 동기적 설명 대신에 인지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다(예: Brewer, 1977). 이 설명은 방어적 귀인이라고 알려진 기존의 연구들에서 피해크기가 그 결과의 발생률과 혼입(confounding)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즉 사람들은 피해크기가 작은 사고보다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발생 확률이 낮은 경우(즉 피해크기가 큰 경우)는 Kelley(1967)의 공변모형으로 볼 때 低-합의성(conensus low) 조건에 해당되므로 이 때는 행위자 귀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Wortman과 Linder(1973)는 사고의 피해크기와 그 사고의 발생률을 조작하여 각 조건에서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책임크기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 책임크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결과의 발생률을 통제하였을 때는 피해크기의 주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피해크기가 책임부여에 미친 효과가 그것의 발생률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yler와 Devinitz(1981)도 책임귀인에서 나타난 편향이 동기적 이유 때문인지 혹은 인지적 왜곡 때문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어떤 사고의 발생가능성과 사고 피해의 크기를 조작하여 행위자(여기서는 문을 잠그지 않아 도난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책임크기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발생가능성이 드문 사고의 경우가 빈번한 사고의 경우보다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커거나, 사고의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의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책임편향이 인지적 이유 때문에 생겼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Brewer(1977)는 책임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R)의 크기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를 congruence라 부름; C)과 행위자의 개입 없이도 그 결과가 발생했을 확률(이를 prior expectancy라 부름; PE)의 합수라 주장하였다. 그는 그 함수관계를 $AR = C - PE$ 의 가산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피해크기가 책임귀인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동기(예: 인과성, 예견성 및 의도성)에 따른 책임귀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피해크기는 위의 공식 중 주로 PE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큰 피해를 일으킨 결과일수록, 그것은 행위자의 개입없이 일어날 확률(PE)이 작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R = C - PE$ 에서 PE가 작아지기 때문에 AR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rewer의 모형은 첫째, PE 등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둘째, 기존 연구들(예: Shaw & McMartin, 1977)에서 나타난 피해크기와 행위자-판단자간 유사성의 상호작용 효과(즉 유사한 경우는 피해크기가 작을 때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 반면, 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 결과를 보인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책임크기 판단의 차이

책임판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룬 행위자 요인은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이 판단자와 유사한지의 여부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Shaver(1970b)의 연구결과는 행위자와 판단자간의 지각된 개인적 유사성이 행위자에

게 부여되는 책임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몇몇 연구들이 이를 반복 입증하였다. Shaver는 둘간의 개인적 유사성이 판단자로 하여금 자신을 '잠재적 행위자'로 느끼게끔 만드는 기능을 하며, 둘이 유사한 경우 판단자는 행위자의 불행을 나쁜 운의 탓으로 귀속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Shaver는 유사성의 주제를 책임의 방어적 귀인이 출현하는 조건으로 다루었다. McKillip와 Posavac(1975)은 판단자들에게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의 태도가 자신과 유사한 것으로 혹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줌으로써 유사성을 조작한 다음 사고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고의 피해가 큰 조건에서는 유사한 행위자보다는 유사하지 않은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 반면,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조건에서는 유사성에 따른 책임부여가 다르지 않았다. Shaw와 McMartin(1977)은 행위자와 판단자의 성으로 개인적 유사성을 조작하였다. 즉 그들의 성이 동일한 경우를 유사한 조건으로, 그들의 성이 다른 경우를 유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정의하여 화학실험 중(혹은 요리실험 도중)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한 책임크기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사한 행위자(즉 동성의 행위자)에게 더 적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상황이 유사한 경우(즉 남자 피험자에게는 화학실험 시나리오, 여자 피험자에게는 요리실험 시나리오)에서만 관찰되었다.

행위자와 판단자간의 개인적 유사성이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책임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보고들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어떤 기제에 의해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 가능성은 대략 세 가지이다: (1)유사성 → 방어적 동기 → 책임판단(Shaver, 1970b), (2)유사성 → 호감(liking) → 책임판단(Mitchell & Byrne, 1973), 그리고 (3)유사성 → 동정심(empathy) → 책임판단(Aderman, Archer, & Harris, 1975)이다. 고재홍(1994)은 가해자에 대한 호감(외모로 조작되었음)이 클수록,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적게 부여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의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Finny, Merrifield, 및 Helm(1976)은 자동차 사고를

낸 피고의 지위를 高(은행장), 中(출납원) 및 低(은행 수위)로 조작하여 피험자들에게 자동차 사고의 인과적 책임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피고의 지위가 높을수록 사고의 인과적 책임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Smith, Keating, Hester, 및 Michell(1976)은 피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사회사업가 혹은 간호사)가 낮은 경우보다 강간 사고를 당한데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들은 행위자(혹은 가해자)의 책임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크기가 역관계임을 고려할 때(Thomas & Parpal, 1987 참조) 피해자의 지위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크기는 추론될 수 있다. 한편 Shaver(1970b, 실험 1)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낸 자극 인물의 나이를 16세, 19세 및 22세로 조작하여 그의 사고에 대한 책임크기를 알아 본 결과, 피해크기를 일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자극 인물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행위자의 지위, 나이 및 지적 능력 등은 행위자의 '결과의 예견능력'을 매개로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는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위로부터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분류될 수 있고(Shaver, 1985), 일반적으로 결과 예견성이 큰 행위는 '범죄'로 규정된다(Kaplan & Miller, 1978). 일탈행위나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온 행위를 크게 사고(accident)와 범행(criminal behavior)으로 구분할 때, 사고의 경우에 결과 예견성이 높을수록 (사고가 예견된 경우) 우리는 행위자의 부주의가 크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의 경우에 사고자에 대한 책임부여는 커진다. 범행의 경우는 결과 예견성이 클 수록(즉 행위자가 그 범행이 가져 올 피해크기를 예견한 경우), 우리는 행위자에게 나쁜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고 짐작하게 되고 행위자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자 특성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

Heider(1958)가 책임판단을 5수준으로 구분한 아래

로 피험자의 연령 발달수준에 따른, 피험자의 문화에 따른 및 피험자의 태도와 성격 변인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의 차이를 다른 연구들이 나타났다. Heider가 책임귀인의 다섯 기준을 어느 정도 인지발달의 의미로 표현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나¹⁾, 그가 인과성(causality) 기준과 의도성(intentionality) 기준을 Piaget(1932)의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Heider의 기준은 판단자의 연령과 관계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들이 판단자의 발달수준(즉 연령)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판단 차이를 다루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앞서 언급한 Shaw와 Sulzer(1964)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Heider의 다섯 수준의 내용을 각각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시나리오 속의 표적인물이 그 결과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를 들어 수준 1(연관성)의 기준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면 소년이 Perry의 장난감 총으로 다른 소년을 때렸다. Perry가 맞은 소년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실험 1)

한 무리의 남자 친구들이 몰려와 여학생 기숙사 방문에 붉은 색 페인트로 낙서를 하였다. X는 실제로 낙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 중 한 명이다. X가 페인트로 낙서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실험 2)

위와 같은 시나리오 속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게 한 다음, 만약 피험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책임의 크기를 5점 척도(작다 — 많다)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이었다. (1) 수준 1에서 수준 4로 올라갈수록 표적인물에게 부여된 책임크기는 증가하다가 수준 5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어떤 행위에 대한 환경적 힘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이 증가한

1) Heider는 나중에 "나는 책임판단의 수준이 아동 발달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한 바는 없다. …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단지 각기 다른 종류의 귀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이다"[1978년 12월의 대담에서, Fincham & Jaspars, 1980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했다.

다는 Heider의 예상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2)수준 1과 수준 2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수준 3~5에서는 그 반대였다. 그들은 이 결과를 행위자의 책임판단에서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연관성 기준(수준 1)과 인과성 기준(수준 2)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Shaw와 그의 동료들(Shaw & Reitan, 1969; Shaw & Sulzer, 1964)은 아동, 범률가, 및 경찰관을 피험자로 하여 Heider의 여러 수준에 따른 행위들을 제시한 결과, 그들의 책임판단은 위와 같은 결과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Fincham과 Jaspars(1979)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령에 따른 책임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피험자 집단을 6세, 8세, 10세, 12세, 및 성인의 5집단으로 하였다. 그 결과 6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4집단은 모든 수준에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책임귀인에 관한 연구들은 (1)결과와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2)결과의 원인이 행위자로 귀속되는 경우, (3)행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던 경우, 그 다음으로 (4)행위자가 의도했던 결과의 경우의 순서로 행위자에 부여된 책임크기가 증가하다가, (5)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Fincham & Jaspars, 1979; Shaw & Reitan, 1969; Shaw & Sulzer, 1964).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는 판단자의 특성 중 연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피험자의 내외 통제성이다(Phares & Wilson, 1972; Sosis, 1974). Phares 등(1972)은 다른 독립변인(상황의 애매성과 피해크기)에 덧붙여 피험자들을 내외 통제성 척도(Rotter, 1966) 점수에 따라 내적 통제성 집단과 외적 통제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내적 통제성 집단이 외적 통제성 집단보다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은 사고의 크기가 심한 경우에만 나타났고, 사고의 크기가 경미한 경우에는 내외 통제성에 따른 책임판단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판단자의 문화 차이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Miller, Bersoff, & Harwood, 1990; Miller & Luthar, 1989). Miller 등(1990)은 미국인과 인도인들을 피험자로 하여 두 가지 독립변인을 조작한 다음, 피험자들이 느끼는 책임감(felt responsibility)을 분석하였다. 이들이 다룬 첫 번째 독립변인은 사건의 심각성으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떤 타인(예: 부모, 친구, 모르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이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피해자와 피험자 자신과의 관계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피해자와 피험자 자신을 부모 관계로 묘사하였고, 가장 먼 관계는 피해자와 피험자 자신을 서로 모르는 사이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이고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 그를 도와주지 못한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인들은 모든 사건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어려운 처지의 남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경우에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문화권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즉 미국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이를 도와줄 것인가의 여부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인도인들은 남을 돋는 것을 모든 사람의 의무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인들은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돋지 못했을 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석하였다.

판단자의 발달단계, 성격요인, 및 문화적 배경이 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자 변인들은 책임판단에 이용되는 기준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판단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위자의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로서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게 된다(Shaw et al., 1969 참조).

책임판단 연구의 문제점

처음부터 Heider(1958)는 책임을 행위의 귀인(attribution of action)과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였다. 그 이

후의 귀인 이론들(예: Jones & Davis, 1965; Kelley, 1967)에서도 책임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후에 Kelley(1971)가 도덕성 평가를 논하면서 책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책임판단을 다룬 연구들의 문제점을 (1)인과추론과 책임판단의 혼동의 문제, (2)책임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3)Heider가 제시한 책임판단 기준이 각기 다른 종류의 책임판단에 사용되는 문제로 구분하여 차례로 언급할 것이다.

원인추론과 책임판단의 차이

분명히 책임부여는 귀인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甲**이란 사람이 주차시켜 놓은 차가 굴러서 어린 아이를 사망케 하였다”라는 상황에서 **甲**의 책임을 따질 때, Jones 등(1965)의 부합추리 이론에서는 그 행위가 의도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합추론(즉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elley(1967)의 귀인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는 **低**-합의성, **高**-특이성, 및 **低**-일관성의 자료형태(즉 도식)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상황귀인(즉 상황에 책임부여)이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위의 상황에서는 행위자(**甲**)에게 책임이 부여된다(Walster, 1966 참조).

귀인과 책임판단이 서로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eider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이 둘간의 개념적 구분을 소홀히 해 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고의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부여 차이를 다룬 연구들의 기본 가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Shaver(1970b)의 방어적 귀인에 관한 생각의 가정은 ‘우리가 어떤 행위자(관찰자 자신과 상황적 및 개인적으로 유사한 행위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cause) 사건을 보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비난(blame)을 피하려 동기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피해의 책임(responsibility)을 나쁜 운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가정 속에는 원인, 비난, 및 책임이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함축되어 있다.

실제로 인과적 책임(즉 원인추론)과 사후적 책임(즉 배상이나 처벌)은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표 1. 원인추론과 책임판단 과정의 주요 차이점

측 면	원인 추론	책임 판 단
정 의	어떤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찾을 것	부정적 결과의 원인이 확인된 후, 그것에게 재채를 주는 것
판단대상	모든 행동이나 결과	부정적 결과에 한정
연구초점	행동과 행위자간의 관계	행동과 결과간의 관계
판단의 주목적	설명(explanation)	제재(sanctioning)
주요원리	공변 및 절감원리 (Kelley, 1967, 1972)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나”원리 (Hamilton, 1980)

의 방향(예: 행위자-관찰자 편향)에서도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의 구분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Hamilton, 1980 참조). 표 1은 원인추론과 (사후적) 책임판단의 몇 가지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좁은 의미에서 귀인은 어떤 관찰된 행동이나 결과(특히 예상치 못한 결과)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인 반면에, 책임은 이미 원인적 실체(causal agent)가 확인된 후에 그 원인적 실체가 이미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미 오래 전에 Heider(1958)는 귀인과정 내에 위계(Heider는 이를 the hierarchy of cognitive awareness라 불렀음)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어떤 사건의 시계(sequence)를 분석하는 순박한 관찰자는 처음에는 행위자 P의 행위결과(action outcome)의 발생조건들(예: 의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중 어느 것이 가장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귀인이 결정된 다음에야 책임부여가 가능해진다(Heider, 1958, p. 114). 그러므로 책임부여 과정은 관찰자가 어떤 결과 X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원인적 실체(예: 행위자의 의도)를 결정한 다음에 오는 과정이다²⁾.

2) 넓은 의미에서의 귀인은 행동(behavior)이나 결과(outcome)로부터 행위자의 의도(intention)나 능력(ability)과

둘째, 원인추론은 모든 긍정적, 중립적, 및 부정적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책임판단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일 때(즉, 피해를 냈을 때),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Heider(1944)는 처음에 책임을 범죄나 그와 유사한 부정적 결과를 냈은 사상에 적용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였다(Fincham & Jaspars, 1980, p. 120에서 재인용). 그러나 후에 Heider 스스로 책임판단 기준들을 설명하면서 긍정적 결과의 예를 제시하였고, 여러 학자들(예: Shaw & Skolnick, 1971)이 부정적 사상과 긍정적 사상 모두에 대한 책임판단을 다루면서 귀인과 책임의 개념 구분이 더욱 모호해졌다.

셋째, 원인추론과 책임판단의 전형적인 연구 초점이 다르다. 행위자 → 행동 → 결과의 순서에서, 귀인 연구는 행동과 행위자 속의 그 무엇(예: 소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에 책임연구는 행동과 결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책임판단은 어떤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해 결과가 야기된 사상(event)에 초점을 둔다. Fincham과 Jaspars(1980)도 귀인은 행동으로부터 행위자의 내부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으로 본 반면에, 책임판단은 행위자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간의 관계성에 관한 판단으로 규정하여 두 과정을 구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책임 연구는 단순한 원인지각을 넘어서 의도지각이나 인과적 사슬(causal chain)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포괄하는 더 넓은 영역이다.

넷째, 판단의 주요 목적이 다르다. 귀인의 목적은 원인-결과간의 인과성에 대한 설명 자체인 반면에, 책임판단의 주 목적은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크기로서 그(녀)에게 적절한 크기의 배상이나 처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³⁾. 즉 우리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녀)를 처벌하거나 그(녀)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Baumeister, Stillwell, & Wortman, 1990).

같은 속성을 추론하는 과정이다(Heider, 1958).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귀인도 원인적 실체가 밝혀진 다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책임은 의도나 능력과는 달리 불변적 속성이 아니다.

다섯째, 각 판단에 사용되는 주요 원리가 다르다. 원인추론에 사용되는 대표적 원리는 공변원리와 절감원리(Kelley, 1967, 1972)인 반면에, 책임판단에서는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그(녀)의 역할상, 또는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그 혹은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나(Could have done otherwise)”의 원리가 사용된다(Hamilton, 1980). 즉 만약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될 때(즉 정당화되지 않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은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판단 원리의 차이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의 경우 외부적인 압력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에게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결과(Reeder & Spores, 1983)를 초래한다.

‘책임’의 다의미성

사전적 정의(한글학회, 1992)에 따르면 책임은 “① 맡겨진 임무나 의무, ② 제재가 주어지는 일”이다. Oxford 영어 사전에서 ‘책임있는(responsible)’은 “① 어떤 일에 대해 또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accountable to another for something), ②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담지는 것(morally accountable for one's action)”이다. 전자의 정의는 ‘원인을 밝히다’ 혹은 ‘설명하다’의 의미로서 주로 인과성(causality)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정의는 ‘도덕적인’ 혹은 ‘법률적인’ 의미를 연상케 한다. 그러므로 책임은 맥락에 따라 인과적 책임, 도의적 책임, 및 법률적(혹은 처벌적) 책임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상 대화에서 “그것은 P에게 책임있다”는 P가 어떤 결과 발생의 원인임을 뜻하는 반면에, “P가 그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P가 사후 조치를 떠맡아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철학자인 Hart(1968)가 분석한 책임은 ‘피해나 그의 행동에 대해

3) 일부 학자들(예: Kelley, 1972)은 귀인과정이 원인추론을 통해 외계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갖게 되는 수단 이외에도,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answerability)'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철학에서의 책임은 ① 행위자가 피해를 일으켰고, ② 그가 법과 도덕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Hart와 Honore(1965)는 책임의 종류를 역할상의 책임(role responsibility),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및 인과적 책임(causal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인과적 책임 이외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의적 책임은 행위자가 도덕이나 규범을 어긴 경우, 역할상의 책임은 행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비교적 광범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및 법률적 책임은 행위자가 법률에 명시된 규준을 어긴 경우에 부여된다. 특히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고, 그가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가 발생한 피해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혹은 규범), 역할, 및 법률은 행위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혹은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강요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고, 그것이 적용되는 조건이 얼마나 명시적인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Hart & Honore, 1965). 반면에 인과적 책임의 경우는 그것이 적용되는 조건이 없다. 즉 이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나 결과(즉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적용된다. 이처럼 책임은 인과적 책임(즉 원인)과 결과의 통제를 위한 사후적 책임(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일반인들과 법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책임'은 주로 후자의 의미이다. 전자의 의미(인과적 책임)는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임이다.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종속 측정치를 "...에 (계) 책임있다(responsible for)"로 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원인 부위(locus of cause)와 원인의 안정성(예: Carroll & Payne, 1977; Schroeder & Linder, 1976),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예: Bray, Struckman-Johnson, Osborne, McFarlane, & Scott, 1978; Nemeth & Sosis, 1973) 및 행위자의 전과 여부(예:

Finney et al., 1976) 등이다. 이와는 달리 사후적 책임에 속하는 처벌, 비난 혹은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은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인과성(예: DeJong, Morris, & Hastorf, 1976) 이외에도 지각된 피해크기(예: 고재홍, 1991; 김지현, 1992; McFatter, 1978), 보상 가능성(예: Shaver, 1970a), 피해자의 지위(예: Jones et al., 1973), 행위자 자신이 입은 피해 정도(예: Austin, Walster, & Utine, 1976), 공범자의 처벌여부(예: DeJong et al., 1976), 및 행위의 재발가능성(예: Carroll & Payne, 1977) 등이다. Shaw와 Reitan(1969)도 제재(sanction)와 인과적 책임은 항상 공변(共變)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제재는 주로 그 행위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책임은 행위 원인의 부위(locu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전 연구들에서 다룬 종속 측정치에 따라 그 종속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름을 볼 수 있다.

Fishbein과 Ajzen(1973)은 "Heider(1958)가 말한 '책임'의 의미가 해당초 매우 애매하여, '행위자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가?'라는 말 속에는 ① 행위자가 그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가? ② 행위자가 그 사고의 원인인가? ③ 행위자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④ 행위자가 그 사고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인가? 그리고 ⑤ 행위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의 5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p. 150)고 언급한 바 있다. Shaver(1985)도 비난, 인과성, 및 책임이 서로 관련되지만 인과성(causality)은 책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Burger(1981)는 일상생활에서 "...에(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귀인의 의미와 처벌의 의미 등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의 측정을 그 의미가 모호한 책임크기로 할 것이 아니라(예: ... responsible for ...), 원인, 비난, 형량, 및 벌금액수 등으로 다양하게 해야 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를 뒷받침해 주는 경험적 증거들도 있다. Critchlow(1985)는 피험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제시하고 다음의 4가지 종속변인

을 31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1)책임판단(How responsible was the person in the story?), (2)비난판단(Do you blame him for what he did?), (3)원인판단(Was he the cause of the incident?), (4)처벌판단(How severely should he be punished?). 그 결과 네 가지 종속 측정치들 간의 상관 계수가 .20~.70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불법적 행위(illegal act)인 경우에는 비난판단치와 책임판단치가 유사하였으나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책임판단치가 비난판단치와 처벌판단치보다 커졌다. 이 결과를 근거로 Critchlow는 “책임, 비난, 원인, 및 처벌판단치들이 서로 관련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측정치로 취급해서는 안된다”(p. 271)고 주장하였다. Mitchell 등(1973)의 연구에서도 행위자의 잘못의 크기와 그에게 부여된 처벌크기간의 평균 상관이 .21에 불과하였다⁴⁾. McGraw(1987)는 나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원인정도, 행위자의 의도, 책임, 및 행위자의 죄책감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행위자의 죄책감 크기와 내부 귀인간에는 역관계(즉 부적 상관)가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정도와 죄책감 크기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비난크기와 부여된 책임크기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Feldman과 Rosen(1978)은 대학생들에게 단독 범행인 혹은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의 사례를 제시한 후, 범인에 대한 책임크기와 처벌크기(여기서는 형량이었음)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단독 범인 경우를 공범이 있는 경우보다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벌크기는 두 조건에서 다르지 않았다. 또한 책임크기와 처벌크기간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다.

고재홍(1991)은 지금까지의 책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해 온 여러 개념들[즉 잘못, 도의적 책임, 처벌(징역 크기, 벌금 액수), 비난크기, 죄책감, 원인, 의도, 및 행위자의 인상 평정치]이 서

4) Mitchell 등(1973)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F 척도(권위주의 척도)에 의해 권위적 태도를 소유한 사람과 평등적 태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행위자의 잘못 크기와 부여된 처벌크기간에 .27 ($p<.05$, $df=70$)의 상관을 얻었고, 후자의 경우 두 종속 변인간의 상관은 .15(ns)이었다.

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80명의 여대생들이 가상적인 절도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범인)에 대한 여러 판단척도에 반응한 종속 측정치들을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속 측정치들은 3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이를 3요인이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62%였다. 제 1요인에 높은 부하량(.40이상)을 보인 개념들은 도의적 책임, 비난, 죄책감, 및 행위자의 인상 평정치 등으로 이는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도의적 책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 2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개념들은 잘못, 원인, 및 의도 등으로 이는 원인(혹은 인과적 책임)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3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개념들은 징역 크기와 벌금 액수였고 이는 분명한 법률적 책임(즉 처벌)요인이다. 제 1요인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 제 2요인은 행위 원인에 대한 판단, 및 제 3요인은 행위결과에 대한 판단이란 측면에서 서로 구분된다. 즉 부정적 결과의 발생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들이 행위자에 대한 판단,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 및 행위결과의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Shaver와 Drown (1986), 그리고 Fincham 등(1980)도 비슷한 지적을 하였듯이, 앞으로의 책임이나 처벌과 관련된 연구들은 종속변인을 3가지(즉 도의적 책임이나 도덕성, 인과적 책임, 혹은 법률적 책임이나 처벌크기)중 어느 하나로 분명히 규정한 다음, 관련 연구들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고재홍, 199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물론 최근의 책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조차 사용되는 ‘책임’이라는 종속변인들의 의미가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및 법률적 책임(예: 형량) 등으로 서로 다르며, 이것들이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같은 종속변인(책임크기 판단)을 사용한 경우들에서도 맥락에 따라 그것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룬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의 개념적 명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2. Heider가 제시한 책임부여 기준들에 해당하는 책임의 종류들

기준들 \ 책임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법률적 책임
연관성 있음	●		
인과성 있음	●	●	
예견성 있음	●	●	○
의도성 있음	●	●	●
정당성 없음	●	●	●

●는 늘 책임이 부여됨을 뜻하는 반면, ○는 기준의 강도에 따라 책임부여 여부가 결정됨을 뜻함.

세 종류의 책임이 부여되는 조건들

Heider(1958)가 제시한 책임판단의 기준들도 각기 다른 종류의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들로 볼 수 있다. 즉 Heider의 책임판단을 위한 다섯 기준들 각각이 적용된 책임의 의미가 다르다. 표 2는 각 기준에 따른 책임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표적인물과 연관된 결과는 표적인물이 그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 원인(즉 遠因)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연관성만 있는 상황은 인과적 책임이나 법률적 책임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표적인물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후손인 표적인물에게 인과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조상이기 때문에(즉 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인물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준 1인 연관성은 표적인물의 도의적 책임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인과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 수준 2인 인과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과적 책임의 기준이다.

수준 3의 기준(예견성)은 표적인물의 법률적 책임(즉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계선이다. 즉 경우에 따라 우리는 표적인물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역할상 혹은 규범상 예견했었어야만 하는 결과에 대처하지 못한 경우는 그(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 이때 적용되는 죄는 과실죄이고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이재상, 1994, pp. 185-201). 법률이 규정한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처하지 못한 죄로는 업

무상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 등이 있다.

수준 4와 5에 해당하는 의도성과 정당성은 표적인물의 법률적 책임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의도가 있었고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한 부정적 결과의 발생은 통상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개 우리는 이런 행위는 도의적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크기에 따라 사후 조치(예: 처벌)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Heider가 제시한 책임판단의 기준들에 따라 책임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표 2는 연관성 기준으로부터 의도성 기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책임부여 크기가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시사한다. 즉 이는 책임판단에 관한 일종의 Guttman 척도(Nunnally, 1978, pp. 72-77 참조)인 셈이다. 예를 들어 수준 2(인과성)는 도의적 책임+인과적 책임이므로 도의적 책임뿐인 수준 1(연관성)보다 책임부여가 크다. 또한 수준 3(예견성)은 도의적 책임+인과적 책임+(일부의) 법률적 책임이고, 수준 4(의도성)는 도의적 책임+인과적 책임+법률적 책임이므로 책임부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수준 2에서는 판단자가 ‘책임’을 도의적 책임이나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해야만 책임부여가 가능한 경우인 반면, 수준 4에서는 판단자가 ‘책임’을 책임의 세 가지 의미 중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간에 책임부여가 가능한 경우이다. 수준 5는 도의적 책임+인과적 책임+법률적 책임(감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의 재해석을 위한 제안

피해크기와 책임크기

이처럼 ‘책임’이 맥락에 따라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혹은 ‘사후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크기와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다른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사고의 원인이 행위자로 귀속된 경우의 ‘책임’은 사후적 책임으로 해석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사고의 피해크기가 클수록 행위자에 대한 책임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고재홍(1995b)도 처벌판단을 다루

면서 처벌(사후적 책임)크기는 책임크기(인과적 책임)와 피해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됨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사람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형평의 회복(즉 응보)이다(고재홍, 1995a; Hogarth, 1971). 이는 잘못한 사람에게 그가 일으킨 피해만큼의 벌을 주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Mosaic law)이 좋은 예가 된다. 명시적으로 종속변인을 ‘책임’이 아닌 ‘처벌크기’(예: 벌금 액수, 형량)로 한 연구들에서는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크기의 차이가 일관성있게 입증되었다(고재홍, 1995a; DeJong, Morris, & Hastorf, 1976; Horai & Bartek, 1978; McFatter, 1978; Rosen & Jerdee, 1974).

그러므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고의 원인이 애매한 경우에서의 ‘책임’은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될 것이고, 이 경우는 행위의 결과(예: 피해크기)가 (인과적) 책임크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사고가 행위자의 통제가능한 원인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책임’은 사후적 책임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피해크기가 클 수록 부여되는 책임(즉 배상액이나 처벌)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책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판단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상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rkkelin, Oakley, 및 Mynatt(1979)가 사고가 통제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서만 피해크기와 책임크기가 관련된다고 주장한 이유도 위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Walster(1966)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동차 사고 시나리오는 운전자(행위자)가 자신의 차를 언덕 위에 정차시키고 자리를 뜬 뒤에 차가 굴러 피해를 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이다(정확히 말해, 운전자가 차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과 언덕 위에 세운 점을 들 수 있다)⁵⁾. 사고의 원인귀속이 이루어 진 이후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물음(Do you feel that any responsibility *should be assigned to* Lennie

(actor) for the automobile accidents?)의 ‘책임’을 그 사고의 사후적 책임, 즉 처벌이나 배상의 크기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자들은 피해가 클수록 행위자에게 큰 책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물음에서 나타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should be assigned to* …)?”의 표현 때문에 피험자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예: 법률가)에 의해 내려진 처벌크기’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이란 통상 법률가를 의미하고, 법률가는 처벌크기를 정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사고의 원인이 행위자의 통제불가능한 원인이나 상황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책임’이 사후적 책임으로 해석되지만, 사후적 책임(즉 처벌)의 크기는 행위자의 인과적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의 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고재홍, 1995ab), 이 경우 행위자의 인과적 책임크기가 0인 경우이므로 피해크기에 관계없이 사후적 책임크기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편 사고의 원인이 애매한 경우의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서도 사고의 피해크기는 행위자의 책임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판단자들은 사고의 인과적 책임을 따지려 할 것이고 사후적 책임의 판단은 유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크기가 책임크기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조건은 ‘책임’이 사후적 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피해가 행위자의 통제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은 (1)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 (2)피해대상자에 따라 책임크기 판단을 다룬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피해발생의 원인이 상황인 경우는 대개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Walster(1967)의 경우에도 피해 발생의 원인이 상황이었고, 이 경우에서 피해크기에 따른 표적인 물의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또한 Shaver(1970b, 실험 3)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실 사고 시나리오의 경우는 사고원인이 애매하다. 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아동들을 초청하여 실험실을 견학시키던 도중에

5) Walster(1966)의 시나리오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행위자 이외의 어떤 것(예: 나쁜 운)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표 3.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크기 판단을 다른 연구 결과들의 요약

연 구 자 (년도)	피험자 수	원인제공자	피 해 자	결 과 ^a
Walster(1966)	88	행위자	타인	피해 大 > 小
Walster(1967, 실험 2)	95 ^b	상 황	본인	피해 大 = 小
Shaver(1970a, 실험 1)	55	상 황	타인+본인	피해 大 = 小
Shaver(1970b, 실험 3)	40	애 매	타인	피해 大 = 小
Shaw와 Skolnick(1971)	58 ^b	애 매	타인	피해 大 = 小
Phares와 Wilson(1971)	80	행위자 애 매	타인	피해 大 > 小 피해 大 = 小
Wortman과 Linder(1973)	113	애 매	타인	피해 大 = 小
Mckillip와 Posavac(1975, 실험 2)	64 ^b	행위자	본인	피해 大 = 小
Medway와 Lowe(1975)	42 ^b	행위자	본인	피해 大 > 小
Schroeder와 Linder(1976)	96	애 매	타인	피해 大 = 小
Shaw와 McMartin(1977)	40	행위자	본인+타인	피해 大 = 小
고재홍, 장정희(1993, 연구 1)	40	행위자	본인	피해 大 = 小

a. 결과는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크기 효과임.

b.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와 긍정적인 경우가 실험설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 수는 추정한 것임.

그 회사에 소속된 한 연구원(행위자)이 수압기(hydraulic machine) 작동 시범을 보이던 도중에 장거리 전화를 받기 위해 잠깐 자리를 뜬 뒤, 합금 조각의 폭발로 인해 피해(전학하던 아동이 다친 사고)가 난 경우이다. 이때 행위자의 잘못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p. 108 참조).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물음(Do you feel that Paul(actor) wa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에서 '책임'을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행위자의 인과적 책임크기는 상황과 행동에 의해 영향받을 뿐, 행위결과에 의해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haver의 연구에서는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인과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사실을 고려할 때(Critchlow, 1985 참조), 위의 두 연구 결과가 상충되는 이유가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Phares와 Wilson(1972)의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잘못 여부와 사고 피해의 크기를 조작하여 피험자에게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행위자의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 사고를 냈 경우)에서 사고의 피해가 사소한 경우보다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 반면에, 행위자의 잘못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전자의 경우 '책임'이 처벌크기로 해석된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책임'이 인과적 원인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은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크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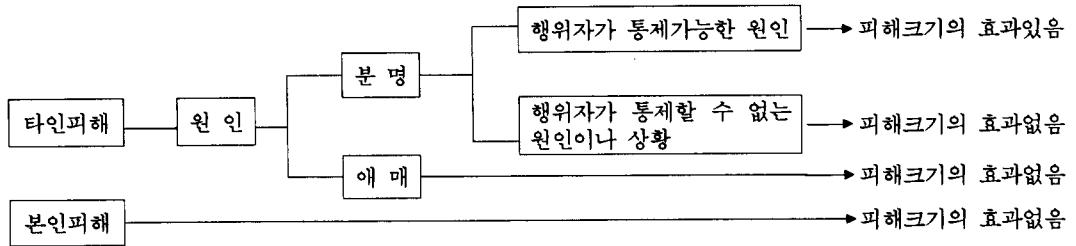


그림 1.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부여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

한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위자 자신인 경우와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도 사정은 다르다. 통상 판단자인 제 3자는 피해자가 행위자 자신인 경우는 사후적 책임(즉 배상이나 처벌)을 부여할 상황으로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는 행위자의 사후적 책임크기를 따져야 하는 상황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크기는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에서만 책임크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Walster(1967)와 고재홍과 장정희(1993)의 연구들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 본인인 경우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일어난 상황이므로 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제 3자인 판단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배상이나 처벌을 부여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연구에서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크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피해가 타인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발생한 경우는 사후적 책임(즉 배상이나 처벌)을 부여할 상황이 아니므로 이때는 피해크기에 따라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Walster의 연구(1967)에서는 행위자가 주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로 묘사되었고, 손해의 크기를 피해크기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크기에 따라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이 경우 피해가 행위자 자신(주택 구입자)에게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후적 책임을 따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크기와 책임크기간에 어떤 관계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Medway와 Lowe(1975)의 연구에서는 행위자가 시험 공부를 교수가 지정한 문제들 중 일부만 공부함으로

써 결국 그가 D학점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실험 참여 의무 시간을 30분(작은 피해조건) 혹은 2시간(큰 피해조건) 배정받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의 원인은 행위자이었고 피해자 역시 본인이었다. 이 경우는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가 큰 조건에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이 연구결과는 설명하기 어렵다.

판단자의 연령, 판단기준, 및 책임판단

표 2에서처럼 각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책임의 의미가 다르다면, (1)기준 연구들에서 보여 준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와 (2)판단기준에 따라 책임크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책임판단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 각 연령 집단이 사용하는 책임 개념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haw 등(196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생보다 수준 1과 2에서는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수준 3~5에서는 오히려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연관성과 인과성을 책임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대학생들은 예전성, 의도성, 및 정당성 기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의 표 2에서 보듯 Heider가 제시한 수준 1과 2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 인과적 책임만을 뜻하는 것인 반면에, 수준 3~5는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및 법률적 책임(예: 배상이나 처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Shaw 등(196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책임’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판단한 반면에 대학생들은 이를 좁은 의미의 ‘법률적 책임’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들의 연구에서 판단기준이 연관성 → 인과성 → 예전성 → 의도성 → 정당성으로 달라짐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완만한 곡선형태로 책임부여 크기가 변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수준 1~2와 수준 3~5 사이에서 책임부여 크기가 확연히 달랐다. 만약 초등학생들이 책임을 도의적 및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하였다면, 수준 2~5는 대략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준 2~5에서 행위자가 결과의 원인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생들이 책임을 법률적 책임으로 해석하였다면, 수준 3~5는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준 3~5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결과를 사후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상은 많은 연구들(예: Shaw et al., 1964)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때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책임부여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 책임부여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모두 설명될 수 있다.

만약 Heider가 제시한 책임판단의 기준에 해당하는 책임이 각기 다른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Harris (1977)의 연구 결과가 잘 설명된다. Harris는 종속변인을 인과성(causality)과 잘못(naughtiness)으로 구분한 다음, 판단자의 연령과 책임판단 기준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과성 판단에서는 성인에 비해 어린 아동들이 Heider의 수준 1과 2에서 표적인물에게 더 많은 원인을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수준에 따른 아동과 성인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잘못 판단에서 성인들은 수준 1~3과 수준 4~5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어린 아동들은 모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이 법률적 책임의 의미(특히 그것의 조건들)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기준의 책임에 관련된 판단들을 다른 연구들의 종속변인인 책임이 의미적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구 결과들의 해석상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상충된 결과를 낼기도 하였다. 그

러나 책임을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및 법률적 책임으로 구분하면 이러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판단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의 의미는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대개의 경우는 법률적 책임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후의 책임판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책임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규정한 다음에 관심있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처벌판단에 관한 가상적 모형.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6, 1-21.
- 고재홍(1994). 가해자의 외모와 형량판단간의 매개과정.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8, 68-84.
- 고재홍(1995a). 처벌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재홍(1995b).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9(2), 29-50.
- 고재홍·장정희(1993). 상황의 모호성에 따른 표적인물에 대한 책임부여. *人文論叢(경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편)*, 5, 21-35.
- 김지현(1992).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목적 선호와 형량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택력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상(1994). *刑法總論*. 서울: 박영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서울.
- Alickie, M. D.(1992). Culpable caus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68-378.
- Anderman, D., Archer, R. L., & Harris, J. L.(1975). Effect of emotional empathy 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43, 156-167.
- Arkkelin, D., Oakley, T., & Mynatt, C.(1979). Effects of controllable versus uncontrollable factors on

- responsibility attribution: A single-subject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0-115.
- Austin, W., Walster, E., & Utine, M. K.(1976). Equity and the law: The effect of harmdoer's suffering in the act on liking and assigned punishment. In L. Berkowitz and E. Walster(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9, pp. 163-190). NY: Academic Press.
- Baumeister, R. F., Stillwell, A., & Wortman, S. R. (1990). Victim and perpetrato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about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94-1005.
- Bray, R. M., Struckman-Johnson, C., Osborne, M. D., McFarlane, J. B., & Scott, J.(1978). The effect of defendant status on the decisions of student and community juries. *Social Psychology*, 41, 256-260.
- Brewer, M. B.(1977).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58-69.
- Burger, J. M.(1981). Motivational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A meta-analysis of the defensive attribu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0, 496-512.
- Carroll, J. S., & Payne, J. W.(1977). Crime seriousness, recidivism risk, and causal attributions in judgment of prison term by students and exper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595-602.
- Cha, J. H.(1971). *Clarity of the focal stimulus cue and the mediation of two opposing social perceptual effects*. Ph. 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haiken, A. L., & Darley, J. M.(1973). Victim or perpetrator: Defensiv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need for order and just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68-275.
- Critchlow, B.(1985). The blame in the bottle: Attribution about drunke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1, 258-274.
- DeJong, W., Morris, W. N., & Hastorf, A. H.(1976). Effect of an escaped accomplice on the punishment assigned to a criminal defend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92-198.
- Feldman, R., & Rosen, F.(1978).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n crime, punishment, and other adversity. *Law and Human Behavior*, 2, 313-322.
- Fincham, F. D., & Jaspars, J. M.(197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elf and other i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589-1602.
- Fincham, F. D., & Jaspars, J. M.(198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om man the scientist to man as lawy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3, pp. 81-138). NY: Academic Press.
- Finney, P., Merrifield, C., & Helm, B.(1976). The actor's behavioral history, his current role, and the divergence between actor and observer responsibility attribu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358-368.
- Fishbein, M., & Ajzen, I.(1973).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 theoretical not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148-153.
- Hamilton, V. L.(1980). Intuitive psychologist or intuitive lawyer? Alternative models of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67-772.
- Harris, B.(1977).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57-265.
- Hart, H. L. A.(1968).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H. L. A., & Honore, A. M.(1965). *Causation*

- in the law. Oxford: Clarendon Press.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Wiley.
- Hogarth, J.(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Horai, J., & Bartek, M.(1978). Recommended punishment as a function of injurious intent, actual harm done, and intended consequ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575-578.
- Jones, E. E., & Davis, K. E.(1965). From act to disposition. In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pp. 219-266). NY: Academic Press.
- Kaplan, M. F., & Millwe, L. E.(1978). Reducing the effects of juror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43-1455.
-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15, pp. 192-23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1971). Moral evaluations. *American Psychologist*, 26, 293-300.
- Kelley, H. H.(1972). Attribution in social interaction.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and B. Weiner(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1-26). NJ: General Learning Press.
- McFatter, R. M.(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Effects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90-1500.
- McGraw, K. M.(1987). Guilt following transgression: A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47-256.
- McKillip, J., & Posavac, E. J.(197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43*, 248-265.
- Medway, F. J., & Lowe, C.(1975). Effect of outcome valence and severity 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36, 239-246.
- Miller, J. G., Bersoff, D. M., & Harwood, R. L.(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in the United States: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ller, J. G., & Luthar, S.(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7, 237-261.
- Mitchell, H. E., & Byrne, D.(1973). The defendant's dilemma: Effects of jurors' attitudes and authoritarianism on judicial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123-129.
- Nemeth, C. J., & Sosis, R. H.(1973). A simulated jury study: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and the juro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0, 221-229.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 Phares, E. J., & Wilson, K. G.(1972). Responsibility attribution: Role of outcome severity, situational ambigui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393-406.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eeder, G. E., & Spores, J. M.(1983). The attribution of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36-745.
- Rosen, B., & Jerdee, T. H.(1974). Factors influencing disciplinary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327-331.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chroeder, D. A., & Linder, D. E.(1976). Effects of actor's causal role, outcome severity, and knowledge of prior accident up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40-356.
- Shaver, K. G.(1970a). Redress and conscientiousnes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100-110.
- Shaver, K. G.(1970b). Defensive attribution: Effects of severity and relevance on the responsibility assigned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01-113.
- Shaver, K. G.(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Y: Springer-Verlag.
- Shaver, K. G., & Drown, D.(1986). On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self-blame: A theoretical no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697-702.
- Shaw, J. I., & McMartin, J. A.(1977). Personal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Human Relations, 30*, 95-107.
- Shaw, J. I., & Skolnick, P.(1971).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 happy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380-382.
- Shaw, M. E., & Reitan, H. T.(196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s a basis for sanctioning behavior.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217-226.
- Shaw, M. E., & Sulzer, J. L.(1964). An empirical test of Heider's levels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39-46.
- Smith, R. E., Keating, J. P., Hester, R. K., & Mitchell, H. E.(1976). Role and justice consideration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a rape victi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346-357.
- Sosis, R.(1974).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93-399.
- Thomas, E. A. C., & Parpal, M.(1987). Liability as a function of plaintiff and defendant fau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43-857.
- Thornton, B.(1984). Defensiv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Evidence for an arousal-based motivation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21-734.
- Thornton, B., Hogate, L., Moirs, K., Pinette, M., & Presby, W.(1986). Physiological evidence of an arousal-based motivational bias in the defensiv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148-162.
- Tyler, T. R., & Devinitz, V.(1981). Self-serving bia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Cognitive versus motivational explan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408-416.
- Walster, E.(1966).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73-79.
- Walster, E.(1967). "Second-guessing" important events. *Human Relations, 20*, 239-250.
- Wortman, C. B., & Linder, D. E.(1973).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outcome as a function of its likelihood. *Proceedings of 81st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149-150.

Responsibility Judgment: A Critical Review

Jae-Ho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Heider's theoretical framework and other researchers' empirical findings about responsibility judgment(RJ) were reviewed critically in the present paper. In spite of the meanings of responsibility(e.g. moral responsibility, causality, and liability so on) are varied with contexts which it was used, most of researchers including Heider didn't specify them in their works. As a result, their findings are in conflict now. If we classify responsibility into moral responsibility, causality, and liability, most of conflicts i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of RJ would be resolved. Although several criteria which determine each type of responsibility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t seems that they consist of a Guttman-type scale to measure the target's overall responsibility. Finally, some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researches of RJ are mentioned.